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0. 1. 15	규칙 제 318호
개정	1991. 6. 10	규칙 제 397호
	1993. 12. 27	규칙 제 543호
	1995. 11. 27	규칙 제 638호
	2005. 7. 8	규칙 제 857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9. 8	규칙 제113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전부개정	2017. 6. 1	규칙 제115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1208호(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폐지예정	2024. 3. 15	규칙 제1299호(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일 2024. 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일) ① 시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시민회관 관리책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국경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② 시민회관 관리책임자는 시민회관의 시설보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10일 전에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관 신청) ① 정기대관은 분기별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이 비어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나 경기도 및 광명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연중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분기(1월~3월) : 직전연도 10월 15일 ~ 말일

2. 2/4분기(4월~6월) : 당해연도 1월 15일 ~ 말일
3. 3/4분기(7월~9월) : 당해연도 4월 15일 ~ 말일
4. 4/4분기(10월~12월) : 당해연도 7월 15일 ~ 말일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민회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연(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민회관 사용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부대시설 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변경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세외수입 전산 통합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로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납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여야 하며, 잔여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

용료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도·시·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회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의 협의를 얻어 시민회관 관리책임자에게 문서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연장비 반입·반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민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6.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 등의 정산보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정산은 사용종료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홍보물 부착 등)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판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홍보물 부착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료 관람 공연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시민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 제한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수강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등) ① 휴강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되, 관장은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휴강된 강좌는 추후 일자를 정하여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강좌를 폐지 할 수 있다.

제17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 및 해당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② 강사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며 강사와 관장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18조(수강료 환불)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1 규칙 제115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8. 2 규칙 제1208호,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3. 15 규칙 제1299호,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2024년 7
월 1일에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민회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사업자/단체		☐ 개인
	사업자/단체명		사업자번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폰 번호		
		E-mail		
사용목적 (행사명 등)			장르	
사용시설명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 강좌실, ☐ 연습실, ☐ 분장실(개소)			
구분	사용일자		사용횟수	
사용일시	20 . . . (요일)부터 (: ~ :)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20 . . . (요일)까지			
준비(셋업) 및 연습(리허설)	20 . . . (요일)부터 (: ~ :)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20 . . . (요일)까지			
본 공연 (전시·행사)	20 . . . (요일)부터 (: ~ :)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20 . . . (요일)까지			
철야	20 . . . (요일)부터 (: ~ :)		야간(회)	
참석예정인원		출연인원	사용료	원
사용 부대설비	불입		납부기한	
첨부서류	행사(공연)계획서 1부		기타사항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신청서					
구 분	품 명		단 위	사용여부 (사용수량)	비 고
악 기	그랜드피아노 (대공연장)		1회		조율비 사용자 부담
	그랜드피아노 (소공연장)		1회		
	업라이트피아노 (연습실)		1회		
무대설비	무대기본시설		1회		
	오케스트라 리프트		1회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회		
	댄스플로어 (대공연장)		1회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소공연장)		1회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덧마루 (합창단용)		1회/1식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이동식 합창단계단		1회/1식		
무대음향	기본사용료	대공연장	1회		재생포함
		소공연장	1회		
	유선마이크		1회/1대		건전지 사용자부담
	무선마이크		1회/1대		
	핀마이크		1회/1대		
	모니터스피커		1회/1대		
영사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노트북 사용자 준비
	빔프로젝트 (소공연장)		1회		
	빔프로젝트 (강좌실)		1회		
무대조명	종합조명	대공연장	1회		종합조명이라 함은 무대조명기기 사용량 20kW 이상일 때를 말함
		소공연장	1회		
	일반조명	대공연장	1회		
		소공연장	1회		
	팔로우스포트라이트		1회/1대		사용자 운영
	포그머신		1회/1대		포그머신액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	드라이머신		1회/1대		드라이아이스 사용자 부담
	스트로보		1회/1대		
	무빙라이트(콘솔포함)		1회/1대		
	파 64		1회/1대		
	파 46		1회/1조		1조 : 8대
	엘립소이드		1회/1대		
냉, 난방	대공연장		시간		
	소공연장		시간		
	전 시 실		시간		
	연습실/강좌실(다목적실)		시간		
전기시설	전력사용료		시간 (kW/시간)		전시실 전기사용료 및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반입 전력사용료
기타	의자/연단/테이블		1회		
	현수막 게첩료		1개소		
	영화촬영(비디오포함)		1시간		전력사용료 별도
	기타 사용시설		1회		

[별지 제3호 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주최		주관		후원	
예정관람료		관람연령	세 이상	관람예정인원	명
공연(행사)의 경우		행사시간	분	공연(행사)횟수	일 회
행사명(공연명)					장르
행사기간		20 . . . (요일) (: ~ :) 부터			
		20 . . . (요일) (: ~ :) 까지			
공연(전시·행사) 목적					
공연(전시·행사)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					
출연자(혹은 작가) 및 단체소개					
최근 3년간 주요 공연(전시·행사) 경력					

[별지 제4호 서식]

시 민 회 관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주 소				연락처(전화)	
성 명					
허 가 기 간	사용 목적			허 가 장 소	
	허가 기간	년 월 일부터	오전()		
		(일간)	오후()		
		년 월 일까지	야간()		
			철야()		
사용요금		원	사용료 내 역	불임	
허 가 조 건		1.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민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요금은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사용일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람에 기일 내 미납부시는 허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시 민 회 관 사 용 불 허 가 통 지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신 청 내 용	사용시설명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행사명)	
불 허 가 사유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사 용 시설명	신 청 자			사용 목적	집회 인원	허가 기간	협조 내용	특별 부대 설비	사용료	허가		비고	결 재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번호	월일				

[별지 제7호 서식]

특별부대시설 허가대장

번호	신청 일자	사용 시설	신 청 자			사용 목적	사용 기간	특별 부대 시설 개요	시설 기간	시설비 계상액	시설 일시	원 상 회복일	사용 허가 번호	비 고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시민회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사업자/단체 ☐ 개인		
	사업자/단체명		사업자번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폰 번호	
E-mail				
허가내용	공연(행사) · 전시명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장소			
변경신청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장소변경			
	☐ 일정변경			
	☐ 내용변경			
	☐ 취소			
	☐ 기타			
사유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민회관사용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시민회관 사용료 분납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사업자/단체 ☐ 개인				
	사업자/단체명		사업자번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폰 번호			
E-mail						
허가 내용	공연(행사) · 전시명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료 분납신청 내역	사용료 총부과액					
	분납신청 횟수	회	선 납 액 (총사용료의 50%)	원	잔여사용료 납부일	· · ·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민회관 사용료를 분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사업자/단체 ☐ 개인		
	사업자/단체명		사업자번호	
	성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 락 처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폰 번호	
			E-mail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일 시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청구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사업자/단체 ☐ 개인		
	사업자/단체명		사업자번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폰 번호	
E-mail				
허가 내용	공연(행사) · 전시명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	사용료 기납부액	원		
	반환청구액	원		
	반환청구 사유			
	반환청구액 입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관람(입장) 수입정산내역서

- ☐ 단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 ☐ 행 사 명 :
- ☐ 사용기간 :
- ☐ 사용시설 :
- ☐ 수입내역 :

구 분 (관람·입장)원	발 행		관 매		잔여 매수	정 산 내 역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관람료 (입장료)	세 금 (매표수수료)	관람(입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 명 : (인)

입회자 직

성 명 : (인)

확인자 직

성 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9. 8. 2>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감면여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④ 일반			
유의사항	신청자격: 광명시거주자(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수강료 반환청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연락처	집	
				휴대폰	
	주소				
반환청구액 입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수강과목	수강기간	총납부액	기이용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원	원	원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